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14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김미애·이인선·서명옥
김태규·엄태영·한지아
조정훈·이종욱·안상훈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청 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 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u>